

HACCP 조기 정착 방안 워크숍

▲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학과)

국가차원에서 각부처별로 공통된 HACCP 프로그램 수립이 시급하며 이전에 농림부내에서 시행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재정비와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담당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업체 담당자들이 국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해도 짧은 기간동안 HACCP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만큼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정 수준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축장에서는 작업장 처리물량에 따라 배치 검사요원에 대한 최소인원산출과 확보방안 및 이들이 실질적인 능력을 갖도록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HACCP 계획의 필수적인 SSOP의 완성은 작업장 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만 HACCP 의무화에 따른 도축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지만 추진이 중단되서는 안된다. 아울러 HACCP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분기별로 1회씩은 점검을 통해 운영은 자율에 맞기고 정부는 지도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밖에 인수공통병질병 병원체 관리와 농장과 연계해 가축군을 관리하는 trace back system이 구축, 냉장육으로의 유통 판매체계 구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명우 팀장(주)하림 HACCP팀

하림에서는 임원회의를 HACCP 운영위원회로 전환할 정도로 경영자의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 특히 부서별 HACCP 운용상황에 따른 시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HACCP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품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 투자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고 시행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도계장 검사가 작업장별 자체고용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수준에 대한 검사를 강화, 미지정업체에 대한 수시 현지검사와 지도를 강화하고 HACCP인증업체에 대해서도 인증후 2년 동안은 6개월 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HACCP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되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과 검사, 수거 등의 과감한 완화와 세제감면, 단체급식용 제품에 대한 HACCP작업장의 생산제품은 사용금지 등의 제도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수와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HACCP 관리 평가기준이 없는 부분육과 육가공품에 대한 적용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황인옥 고문(한국계육협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작업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도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이같은 사전점검을 통해 도계장별 HACCP 시행시기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은 미리 사업전환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신력 있고 정확하게 고시하고 각업체에서 HACCP를 담당 한 직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C

(축산신문 발췌)